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'21. 1. 26. 시행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기존 법 제12조제4항이 같은 조 제5항으로 변경되고 법 제 11조제5항이 같은 조 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신설·폐지 등 없음

법무부령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법 제12조제4항”을 “법 제12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무위반사실 통보서

(00-0000-0000)

제 0000-00000 호

수 신:

제 목: 의무위반사실 통보

다음 사람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이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,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무위반자	성 명			
	주민등록번호	- (세)		
	주 소			
의무위반사실	일 시	년 월 일 시 분		
	장 소			
	내 용			
적용법조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2호)		
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,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3호)		
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4호)		
	[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5호)		
		[]사회봉사·수강명령(법 제36조제1항제4호)		
		[]보호관찰(법 제36조제1항제5호)		
		[]감호위탁(법 제36조제1항제6호)		
		[]치료위탁(법 제36조제1항제7호)		
		[]상담위탁(법 제36조제1항제8호)		
통보인 인적사항	성 명		소 속	
	전화번호		직 급	

소속:

사법경찰관리(상담원 등)

(서명 또는 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)	제4조(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<u>법 제12조제4항</u> 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.	② ----- ----- <u>법 제12조제5항</u> --- ----- ----- -----.